

중국은행 송금서비스 약정서

2020년 3월 31일 개정

이 약정서는 중국은행 서울지점 (이하 "은행" 이라 한다.)과 체결한 계약에 의거 송금서비스 (이하 "송금" 이라한다)를 이용하는 고객(이하 "고객"이라 한다)간의 송금처리를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1조 (약관의 적용)

이 약정은 '외국환거래규정 제 4-3조 제1항 제1호'에 근거한 **거주자의 동일인 기준 연간 미화 5만불 이하의 송금**과 '동 규정 제 4-4조 제 2항'에 근거한 **외국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동일인 기준 연간 미화 5만불 이하의 송금** 처리업무에 적용한다

제 2조 (송금 약정)

- ① 고객은 본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송금 수취인('이하 "수취인"이라 한다)을 지정하고, 수취인성명, 예금 계좌번호, 송금금액 등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.
- ② 고객은 수취인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, 즉시 은행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변경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.
- ③ 은행은 이 약정상의 송금처리를 위하여 "거주자의 지급증빙 미 제출 송금(연간 5만 달러 한도 이내)" 또는 "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보수 또는 소득금액" 항목에 대하여 거래외 국환은행을 지정한다.

제 3조 (송금 적용환율)

은행은 고객이 송금 전용계좌에 이체를 하면, 그 금액을 송금 처리하며, 적용환율은 은행에서 고시하는 송금일 당일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한다.

제 4조 (수수료)

- ① 송금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 1개월 전에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1개월간 게시한다.
- ② 수수료(율)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행 외환거래기본약관 제7조의 변경절차를 준용한다.

제 5조 (송금의 취소)

송금의 취소는 고객이 직접 은행창구에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취소절차는 일반 송금 취소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한다.

제 6조 (은행의 면책)

- ①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.
- ② 은행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외국환거래법 등 외국환관련 법령에서 정한 송금제한 사유 또는 송금전용계좌에 대한 압류, 가압류 등 법적 지급제한 및 은행의 귀책사유가 아닌 회선장애 등으로 인한 송금업무의 처리지연 및 불능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아니할

수 있다.

제 7조 (준용규정)

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국환거래법령 및 송금약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.